MAS 고시: PSN01, PSN02 및 DTSP 고시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DPT 사업의 운영상 AML/CFT 의무는 지급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 PSA)에 따라 발령된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MAS 고시 PSN01(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 Specified Payment Services)은 계좌 발행, 국내 및 국경 간 송금, 가맹점 매입, 전자화폐 발행에 적용됩니다. MAS 고시 PSN02(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 Digital Payment Token Service)는 DPT 서비스를 영위하는 모든 지급서비스 라이선스 보유자와 경과 기간 중인 면제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1] 두 고시는 모두 2019년 12월 5일에 발령되어 PSA 시행일인 2020년 1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고시는 그 후 모두 개정되었습니다. PSN02의 개정은 제K편 제I장에서 설명한 DPT 범위의 확대를 반영해 왔습니다.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Part 9에 따라 라이선스를 받은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자(DTSP)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FSMA에 따라 발령된 별도의 고시를 적용받습니다. 이 제도는 싱가포르 밖의 고객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6월 30일에 시행되었습니다.[2] 실무상 요점은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MAS가 어느 법률에 근거한 라이선스인지와 관계없이 DPT 범위 전반에 하나의 AML/CFT 기준을 적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PSN02를 아는 독자라면 DTSP 고시도 아는 셈입니다.

고시의 법적 효력

MAS 고시는 규정(regulations)으로 관보에 게재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하위법령입니다. PSA Section 102(Section 102)는 MAS에 라이선스 보유자에 대한 서면 지시와 고시를 발령할 권한을 부여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벌금이 부과되는 범죄이고 위반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일일 벌금이 부과됩니다.[3] MAS는 고시 위반을 통상 기소하지 않습니다. 대신 화해금 납부로 사건을 종결(compound)하거나(기소 대신 일정 금액을 수령), 견책하거나, 라이선스 조건을 부과하거나, 최악의 경우 라이선스를 취소합니다. 이 편의 제VII장에서 제재 집행 기록을 설명합니다.

외국 독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구조는 고시와 그 가이드라인의 관계입니다. 각 AML/CFT 고시에는 MAS 가이드라인이 수반됩니다(PSN02의 경우 Guidelines to Notice PSN02 on 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 Digital Payment Token Service).[4]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MAS 검사관은 가이드라인을 통제 체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는 회사는 자신의 방식이 왜 같은 결과를 달성하는지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위스 독자라면 이 방식을 FINMA 회람에서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FINMA 회람은 FINMA의 법 해석으로서 감독 대상 기관에 형식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반면, MAS 가이드라인은 형식상 설득적 효력만 있습니다. 실무상 둘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법규	제정 주체 및 근거	법적 효력	주요 내용
CDSA 1992, TSOFA 2002	의회		범죄, 보고 의무, 몰수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법규	제정 주체 및 근거	법적 효력	주요 내용
		형사 법률, 싱가포르 내 모든 사람을 구속	
2001년 국제연합법(United Nations Act 2001)에 따른 규정	장관	하위법령, 모든 사람을 구속	제재 및 자산 동결
MAS 고시(PSN01, PSN02, FSMA DTSP 고시)	PSA Section 102 / FSMA에 따른 MAS	라이선스 보유자를 구속, 위반 시 범죄	고객확인(CDD), 기록 보관, 의심거래보고(STR) 절차, 그룹 정책
고시에 대한 MAS 가이드라인	MAS	구속력 없음, 단 검사의 기준	고시의 적용 방법, 사례, 위험 신호
MAS 회람 및 정보 문서	MAS	구속력 없음	주제별 점검 결과, 기대사항, 모범 사례
MAS FAQ	MAS	구속력 없음	구체적 질문에 대한 해석

주

1. MAS Notice PSN01 및 MAS Notice PSN02, 모두 2019년 12월 5일 발령, Payment Services Act 2019 시행일인 2020년 1월 28일부터 효력 발생; 2021년 PSA 개정과 2024년 DPT 정의 확대를 반영하는 개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개정됨. ↩
2. MAS Notice on 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 Digital Token Service Providers, FSMA Part 9에 따라 발령, 2025년 6월 30일부터 효력 발생; DTSP 제도에 관해서는 제K편 제V장 참조. 고시 번호: FSM-N27.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3. PSA 2019, s. 102(지시 및 고시)와 같은 편의 벌칙 규정을 함께 참조; MAS는 그 밖에 PSA에 따른 범죄에 대해 화해금 납부로 사건을 종결할 권한도 있습니다. ↩
4. MAS Guidelines to Notice PSN02, 2020년 3월 16일 최초 발령, 이후 개정;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MAS가 라이선스 보유자의 행위를 평가할 때 그 준수 여부를 고려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